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 동 오 의원)

의안 번호	24-42
----------	-------

발의년월일: 2024. . .

발의자: 강동오, 고병준, 김승수, 신종갑,
오욱자, 이상원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3. 26. ~ 2024. 4. 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톳길 등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경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
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주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 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박수엽
연 락 처	02-3153-9557